

(앞쪽)

등록번호 제 호

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

상호(명칭)

성명(대표자)

생년월일

사무실 소재지

실험실 소재지

「하수도법」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(뒤쪽)

<변경사항>

[illegible]

<처분사항>

[illegible]